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2. 9 (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27)

2. 개정이유

- 주차요금 단수 정산방식의 현행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2021.7.20.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결제방법이 현금에서 카드 변경에 따른 단수계산의 단위 변경(별표1)
 - 단수계산 “100원 미만” 을 “10원 미만” 으로 단위 변경

○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별표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80%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주차요금 50% 감면

4.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5.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요금 결제방법이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요금 단수 정산방식의 현행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2021.7.20. 시행)¹⁾ 사항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2021.7.20.>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결제방법 변경에 따른 단수계산의 단위 변경(별표1)에
주차요금 감면 할인 시 발생하는 단수계산의 단위를 기존
“100원 미만”에서 “10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 주차요금 감면대상(별표1)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80%를 감면하는 내용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지원대상자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결제방법이 현금에서 카드 등 간편결제
방식으로 변경 추세에 따른 정산방식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단수계산
의 단위를 기존 ‘100원 미만’에서 ‘10원 미만’으로 변경한 내
용은 마포구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 주차장법 제9조²⁾, 제14조³⁾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참전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2021.7.20. 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주차장 요금 할인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거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